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6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민형배・이개호・송재봉

노종면 • 김재원 • 황운하

박홍배 • 윤준병 • 윤종군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역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급속히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지역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역소멸 위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시·도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합니다.

최근 생활방식 변화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이유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 거주 거점을 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 에 한 곳에 주소를 두는 현재 단수주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관리를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 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반경 확대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등록상 비수도권 인구를 늘려 지방재 정 확충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법」에 대한 특례) ①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주민등록법」에 대
	한 특례) ① 「주민등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
	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
	<u>고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